



연말정산 소득·세액공제 요건표



기본 공제	구 分	공제 요건				비고	
		나이요건*	소득요건*	동거 요건			
				주민등록동거	일시퇴거 허용		
	본인	×	×	×			
	배우자	×	○	×			
	직계존속	60세 이상	○	△ (주거형편상 별거 허용)		1963.12.31. 이전	
	직계비속, 동거입양자	20세 이하	○	×		2003. 1. 1. 이후	
	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	×	○	×			
	형제자매	60세 이상 20세 이하	○	○	○	1963.12.31. 이전 2003. 1. 1. 이후	
	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	×	○	○	○		
	위탁아동		○				
추가 공제	장애인	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					
	경로우대	기본공제대상자 중 70세 이상인 자				1953.12.31. 이전	
	부녀자	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(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자)					
	한부모	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부양자녀(20세 이하)가 있는자					
	연금보험료 공제	공적연금보험료의 근로자 본인 불입분만 공제 가능					

* **나이요건**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, 당해 과세기간 중 공제기준일이 해당하는 날이 있는 경우 적용

* **소득요건**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)

구 分	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		근로기간 지출한 비용만 공제	비고
	나이요건	소득요건		
특별 소득공제	보험료	근로자 본인 부담분만 공제 가능 (건강·노인장기요양·고용보험료)		
	주택자금공제	-	○	본인만 가능
그 밖의 소득공제	개인연금저축	근로자 본인 불입분만 공제 가능(배우자, 부양가족 불입분 제외)		
	주택마련저축	세대주인 근로자 본인 불입분만 공제 가능		
	신용카드 등	×	○	형제자매 제외
	자녀세액공제 (8세이상)	○	○	- 기본공제대상 자녀 (입양자·위탁아동·손자녀 포함)
	연금계좌세액공제	근로자 본인 불입분만 세액공제 가능(배우자, 부양가족 불입분 제외)		
특별 세액공제	보장성보험료	○	○	
	의료비	×	×	○
	교육비	×	○	○ 직계존속 제외 * 장애인특수교육비는 소득요건 제한 없으며, 직계존속도 가능
	기부금	×	○	×
	표준세액공제	기본공제대상자 * 정기자금기부금, 고향사랑기부금,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본인만 가능		



연말정산 과다공제 유형



항목	과다공제 사례
① 소득금액 기준(1백만 원) 초과 부양가족 공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연간 소득금액(근로·사업·양도·퇴직소득 등) 합계액이 1백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인적공제(기본+추가공제) *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백만원
② 부양가족 중복공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맞벌이 근로자가 자녀 등을 중복으로 공제형제자매가 부모님을 각각 중복하여 공제
③ 사망자에 대한 인적공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과세기간 개시일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해 인적공제
④ 이혼한 배우자 등 공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과세기간 종료일 이전 이혼한 배우자에 대해 인적공제이혼 후 지출한 보험료·기부금 등에 대해 세액공제
⑤ 연령 조건에 맞지 않는 부양가족 공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연령 조건 미충족 형제·자매에 대해 부양가족 공제
⑥ 교육비·의료비 등 중복공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동일 부양가족의 의료비, 교육비, 신용카드 공제를 다수의 근로자가 중복 또는 분할하여 공제
⑦ 주택자금 과다공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유주택자*임에도 주택자금(월세액 공제 포함) 공제 *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1주택자도 공제 가능
⑧ 교육비 과다공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자녀, 형제자매 등의 대학원 교육비 공제자녀 교육비를 부부가 중복으로 공제교육비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학자금(비과세)을 지원받거나,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을 공제
⑨ 의료비 과다공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실손의료보험금 등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보전받은 의료비를 공제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「분인부담금 상한액 초과환급금」 상당액을 공제
⑩ 중소기업취업자 감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감면대상 업종*이 아님에도 감면 신청 * 제외업종(예시) : 전문서비스업, 보건업, 금융 및 보험업, 교육서비스업 등

* ① ~ ⑤의 경우,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(기본공제+추가공제) 뿐만 아니라,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특별공제(보험료, 교육비, 신용카드, 기부금 등) 또한 배제